

제5차 산업경제위원회
2011.12.19 (월) 16:00

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송장섭

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황규철 의원 외 6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1년 11월 23일

나. 회부일자 : 2011년 11월 28일

3. 제안 이유

- 농업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원에 의뢰되는 시험 및 분석 수수료 면제 범위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확인서를 첨부하는 시험에 대해서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시험 등의 목적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한 경우 수수료 징수 규정 명기(안 제11조제4항)
- 나. 시험등의 수수료 면제범위 확대(안 제12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농업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원에 의뢰되는 시험 및 분석 수수료 면제 범위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확인서를 첨부하는 시험에 대해서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